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2015년 5월 결손(시효결손) 결정결의

징수권의 소멸시효(5년)가 완성된 체납 지방세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하고, 붙임과 같이 결손결정 결의코자 합니다.

1. 시효결손 대상 :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방세(2010년 2월이전 부과분)
2. 결손 건수 및 금액 : 1,463건/금447,676,170원
(금사역사천칠백육십칠만육천일백칠십원)

- 붙임 : 1. 결손결정결의서 1부
2. 결손집계표 1부
3. 결손내역서 1부. 끝

주무관 서복순 38세금징수팀장 김희동 세무관리과장 신오식 기획경제국장 전결 06/08
문경수

협조자

시행 세무관리과-12614 () 접수 ()
우 135-705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전화 02-3423-5624 /전송 02-3423-8832 / nicebokja@gangnam.go.kr / 부분공개(5,6)